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4. . 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, 사회 참여확대, 남녀평 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재원은 영주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함(안 제2조)
- 나.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 회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마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, 의결요건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내지 제9조)
- 아. 회계연도마다 가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기금재산에 관한 사 항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12조)

- 자.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함(안 제13조)
- 차.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해서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14조 내지 제15조)

3. 자치법규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영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
- 나. 시·군별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

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여성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영주시의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여성활동 지원에 사용한다.

1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
3.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교육 지원
4.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5.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
6.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영주시의회 의원 2인
2.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
3. 여성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전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임명·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4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여성복지업

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
2. 기금출납원 :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

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금결산보고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▣ 참 고 자 료

가. 영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

조성목표액 : 5억원

조성기간 : 10년(2004~2013년)

연도별 조성액 : 매년 5천만원

사용계획

-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-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
-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교육 지원
-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-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
-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여성발전 기반조성과 능력개발, 사회참여 확대, 남녀평등 의식 촉진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

나. 시·군별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

(2003. 12. 31 현재)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조례제정	조성기간	조성목표	조성액			비고
				계	2003까지	2004계획	
계	9개시군		4,200	2,590	1,880	710	
포항시	2000.1.14	2000~2009	1,000	600	600	100	
경주시	2001.5.31	2001~2005	500	300	300	100	
김천시	2000.2.24	2000~2010	500	150	150	50	
안동시	2002.8.12	2003~2008	300	50	20	20	
구미시	1999.1. 7	2000~2002	500	500	310	190	
영주시	-						
영천시	2000.8. 9	2001~2006	300	150	150	50	
상주시	1999.11.30	2000~2005	300	208	200	50	
문경시	-						
경산시	2002.5.11	2003~2007	500	100	100	100	
군위군	-						
의성군	-						
청송군	-						
영양군	-						
영덕군	-						조례제정계획
청도군	-						조례제정계획
고령군	-						
성주군	-						
칠곡군	-						
예천군	-						
봉화군	2003.2.17	2003~2008	300	100	50	50	
울진군	-						
울릉군	-						